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51276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고1. D

2. E

변론 종결2022. 7. 14.

판결 선고2022. 8. 18.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58,395,420원 및 그중 23,252,106원에 대하여는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04%, 6,906,854원에 대하여는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9%, 19,160,054원에 대하여는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3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43,210,90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E는 원고에게 43,210,908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과 사이에 2011. 6. 20.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입계약을, 2019. 6. 28. 같은 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D에게 2019. 12. 18. 같은 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만기를 2023. 7. 17.로 정하여 19,900,000원을 대출하였다. 2021. 5. 28. 기준 위 각 신용카드거래 등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내역은 같은 표 기재와 같다.

1	F카드 (신용카드번호 1)	23,252,106	2,727,630	2,605,723	28,585,459	16.04%
2	G카드 (신용카드번호 2)	6,906,854	711,993	790,661	8,409,508	16.9%
3	H (신용카드번호 3)1) 특수채권계좌번호이다.	19,160,054	1,703,981	536,418	21,400,453	17.32%
합계	58,395,420					

나. 피고 D은 2019. 11. 13. 어머니인 피고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3.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D에 대하여: 갑 제1~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합계 58,395,420원 및 그중

신용카드대금 원금 23,252,106원에 대하여는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6.04%, 신용카드대금 원금 6,906,854원에 대하여는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6.9%, 대출금 원금 19,160,054원에 대하여는 2021.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7.3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합계 58,395,420원 상당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여계약일로부터 매우 근접한 2019. 11. 18.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바,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은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E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43,210,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원고가 피고 D와 사이에 각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19. 11. 18. 카드번호(신용카드번호 4 생략)인 신용카드대금 1,732,150원 중 1,634,620원을 변제하여 그중 97,530원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카드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으로 된 신용카드대금 23,252,106원 및 카드번호(신용카드번호 2 생략)으로 된 신용카드대금 6,906,854원이 각 같은 시점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거나(같은 시점에 물품구매 및 용역제공 등이 이루어졌거나) 그 무렵 각 같은 액수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2019. 12. 18. 피고 D이 원고로부터 'H'이라는 상품을 통해 19,9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위 대출금의 분할상환금을 2020. 9. 17.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위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각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은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백소영

별지

1) 특수채권계좌번호이다.